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월 10일, 심현정 의장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1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남진삼 의원)

가. 제안이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있어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심사를 방지하고자 집행기관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심사의 판단 근거인 제출서류 목록을 명확히 하여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동의안 제출 시 필요서류로서 ‘위탁계획 관련 서류’를 삭제
(안 제7조 관련)
- 2) 제7조의2(민간위탁 동의안)를 신설하여
의회 동의안의 제출서류로서 각 10호를 규정(안 제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있어
형식적인 자료 제출 및 심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로써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고 정비한 ‘민간위탁 동의안’ 조문을 신설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의 실효성을 엄밀히 판단하여

무분별하고 관행적인 민간 위탁을 방지하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동의안”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에만 해당한다)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7조(의회의 동의) ① ----- ----- ----- 동의안-----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탁사무명</u> 2. <u>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u> 3. <u>위탁사무 내용</u> 4. <u>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u> 5. <u>민간위탁기간</u> 6. <u>수탁자 선정방식</u> 7. <u>소요예산 및 산출근거</u> 8. <u>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u>

	<p><u>적정성 검토 결과</u></p> <p>9. <u>제19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u> <u>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u> <u>는 재협약 시에만 해당한다)</u></p> <p>10. <u>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u> <u>요한 사항</u></p>
--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관련 조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
연락처	(033) 330 - 2500